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성에 대한 리해

최 덕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잘 지킬수 없고 정확히 집행할수 없습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성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는것은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되여 도 자기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민사적권리의 특성에 맞게 권리당사자들의 재산적리 익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적권리는 그 형태를 바꾸는 경우 원래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민사적권리에 그대로 이전되는 가치보존의 성질 즉 가치보존성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팔고사기관계에서 소유권은 대금채권으로, 대금채권은 다시 소유권으로 그 형태가 변화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래의 민사적권리에 내포되여있는 가치는 가치보존성의 원리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민사적권리들에 그대로 이전되여 보존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재산이 불법침해로 멸실된 경우에도 물건자체에 대한 재산임자의 소유권은 소멸되지만 그 물건에 해당한 가치상의 권리는 불법침해를 근거로 새롭게 변화된 손해보상청구권이라는 민사적권리에 그대로 이전되게 된다.

이처럼 민사적권리가 형태를 바꾸어도 그 재산적가치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 게 되는것은 등가성의 원칙을 근본기초로 하는 민사법률관계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된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등가성의 원칙은 원래 재산을 주고받을 때 그 가치가 서로 꼭같을것을 요구하는 경제거래의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이것은 순수 경제거래관계에서 만 작용하는 원칙으로 리해할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볼 때 등가성의 원칙은 경제거래관계는 물론 소유관계에서도 다같이 작용하는 민사법률관계설정의 기초적이며 일반적인 원칙으로 된다.

등가성의 원칙을 그 설정의 근본기초로 하는 민사법률관계의 특성으로부터 민사적권 리는 원래의 형태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가치상으로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민사적권 리로 변화되여 계속 존재하게 되는것이다.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와 가치보존성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시 가치보존의 조건과 그 범위를 정확히 확 정하는것이다.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시 그 가치보존의 조건은 크게 권리자의 의사에 기초하는 경우와 기초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그 범위도 해당 경우에 따라 서로 달리정해지게 된다.

민사적권리는 우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될수 있다.

다시말하여 민사적권리는 새로운 형태의 민사적권리의 설정을 목적하는 권리자의 의 사표시와 그에 따르는 상대방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변화될수 있다. 이를 민 사법률행위를 통한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라고도 한다. 실례로 일정한 재산에 대한 소유 권은 그 재산임자의 의사에 따라 팔고사기계약이 체결되거나 빌리기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금채권 또는 재산반환채권으로 그 형태가 변화되게 된다.

권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민사적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범위는 권리자의 의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상대방당사자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즉 새롭게 변화되는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의 범위는 권리자와 상대방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원래의 민사적권리의 재산적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되게 된다.

당사자들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어긴 경우에 새롭게 설정되는 보상책임의 범위도해당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약정한 원래의 민사적권리의 재산적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게 된다. 즉 당사자들이 합의한 원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극적손해(줄어든 손해)는 물론 소극적손해(늘지 못한 리득)까지도 완전한 가치로서 보상되게 된다.

권리자와 상대방당사자사이에 합의로써 정해지는 원래의 민사적권리의 재산적가치를 현실에서는 일명 가격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가격의 설정에는 권리대상물의 원가나 그 에 대한 사회적수요, 장래리익의 가능성 등 여러가지 객관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충분히 타산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된다.

민사적권리는 또한 권리자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그 형태가 변화될수 있다.

민사적권리는 권리자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서도 다른 형태의 민사적권리로 변화될수 있다. 실례로 불법침해행위로 소유권을 상실한 피해자의 민사적권리는 법이 직접 정한데 따라 가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의 형태로 변화되게 된다.

민사적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는 관계없이 법에 기초하여 다른 형태의 권리로 변화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민사적권리에 내포되여있던 재산적가치는 법이 정한 새로운 형태의 민사적권리들에 그대로 이전되게 된다. 이 경우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의 범위는 민사법률행위를 통한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와는 달리 법정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지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현재 적지 않은 민사거래들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있는데 만일 불법침해로부터 발생된 손해보상청구액의 기준범위를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는 관계없이 순수 법정가격에만 기초하여 정한다면 민사관계설정의 근본원리를 이루는 등가성의 원칙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불법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액의 기준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등가성의 원칙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량의 극히 일부만을 보상하도록 하는것은 민사관계의 설정에서는 물론 민사적권리의 보호에서도 다같이 적용되는 등가성의 원칙에 모순되는것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침해로 하여 변화된 손해보상청구권의 가치 보존범위를 확정하는 경우 권리자(피해자)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불법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보상청구권의 가치보존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권리자(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경우 원래의 민사적권리의 재산적가치를 주장하는자에게 그에 대한 립증부담을 지워야 한다. 즉 권리자가 불법침해당한 물건의 실지가격(구매가격)을 객관적인 사실자료들에 근거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불법침해당한 물건의실지가격을 증명한 경우라 하여도 그 물건의 현재가격에 미치게 되는 객관적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적권리의 가치범위는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과 사용정도, 그것의 실질적인 리용과 사회적수요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된다. 때문에 권리자의 주장사실에 기초하여 민사적 권리의 가치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민사적권리의 현실적인 가치에 미치게 되는 객관적요인들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의 범위는 해당 민사적권리의 실지가치와 현실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객관적요인들을 심중히 고려한데 기초하여 재판소의 판결로써 정하게 된다.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와 가치보존성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와 가치보존성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을 가지는것이다.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의 성질은 반드시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를 전제로 하여서만 론의될수 있다. 즉 형태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민사적권리에 대하여서는 가치보존성에 대한 문제를 론의할수 없다.

일련의 경우 민사적권리는 그 형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민사적권리에 내포되여있던 재산상의 리익도 가치상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

우선 권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민사적권리가 가치상으로 완전히 소멸될수 있다. 실례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을 과실로 소멸시킨 경우를 들수 있다.

또한 민사적권리는 계약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될수 있다. 실례로 일정한 물건의 사용가치가 정상상태의 50%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을 빌린자에게 완전히 넘겨준다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적인 계약을 들수 있다. 계약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빌려준자(물건임자)의 소유권은 해당 조건이 성립되면 다른 민사적인 권리로 변화되지 않으며 가치상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

민사적권리는 시효와 같이 법이 정한 사유에 의해서도 가치상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 또한 민사적권리는 우연사유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도 다른 형태로 변화되지 않고 가치상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

여기에서 우연사유는 민사관계당사자(권리자 혹은 의무자)들의 허물이 아닌 제3자의 허물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사유를 말한다. 실례로 판매되는 물건을 제3자가 파손시 키고 도주하여 가해자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를 들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허물을 고착 시키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손해보상청구권으로 이전될수 없으며 가치상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 따라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해당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주인(소유권자)이 감수하여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는 민사적권리가 소멸될수 있다는것을 예견할수도 피할수도 없었고 막을래야 막을수도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실례로 큰물로 하여 양복점과 함께 손님이 맡긴 천도 류실된 경우를 들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천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권리로 이전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 따라서 우연사유와 마찬가지로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재산상손해도 당시의 물건임자(소유권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우연사유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될수 있는 가능성을 일반 적으로 위험이라고 한다. 우연사유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위험은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권리자의 재산상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한것이 다름아닌 보험법률관계인것이다.

보험법률관계는 보험자가 민사적권리자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계약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보상금을 내여줄 의무를 지니는 법률관계이다. 보험법률관계는 위험 발생의 우연성(발생될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유)으로 하여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던 손해발생의 위험을 피하려는 권리자와 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를 통 하여 가능한 보험수익을 얻으려는 보험자사이에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보험법률관계가 확립됨으로써 민사적권리자들은 우연사유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발생된 재산상의 손해를 인위적으로 그 형태를 변화시킨 보험보상금 청구권이라는 민사적권리를 통하여 가치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 다. 민사적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적으로 발생되는 권리소멸사유를 보험보상금청 구사유로 변경시킴으로써 민사적권리상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게 되는것이다.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성에 대한 문제는 민법의 적용과 관련된 실무실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성은 우선 거래관계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자기의 재산상리익을 가치상으로 원만히 실현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기초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성은 원래의 민사적권리의 재산적가치를 변화된 민사적권리에 인위적으로 보존시킴으로써 민사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리해관계에 따라 민사적권리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목적하였던 재산상리익을 가치상으로 원 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법률적공간으로 된다.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성은 또한 불법침해로부터 권리자의 민사적권리를 가치상으로 원마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기초로 된다.

비법적으로 침해된 민사적권리에 대한 완전한 법적보호는 권리자(피해자)가 피해를입기 전의 재산상리익을 가치상으로 보상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의 성질은 거래관계뿐아니라 민사적권리에 대한 불법침해관계에도 그대로 인정되며 따라서 권리자(피해자)는 새롭게 변화된 손해보상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침해된 재산상의 권리를 가치상으로 완전히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이처럼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와 그에 따르는 가치보존성에 관한 문제는 민사관계당 사자들사이에 발생하는 재산상분쟁문제해결에서 최대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민사적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명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민사적권리의 형태변화와 그에 따르는 가치보존성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것과 함께 민사법분야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심화시켜나감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참답게 보장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민법, 민사관계, 가치보존성